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법률 부칙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